

5.1.7 생활관관생수칙

제정 2000. 04. 21.

개정 2000. 11. 07.

개정 2011. 10. 25.

개정 2013. 08. 06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수칙은 관생이 입사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사기간 중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수칙은 초당대학교 생활관 관생수칙이라 한다.

제2장 입사 및 퇴사

제3조(입사) 입사시 소정의 선발기준에 합격한 학생에게 입사자격을 부여한다. 퇴사한 학생의 입사는 원칙적으로 입사를 불허한다. <개정 2011.10.25., 2013.08.06.>

제4조(호실배정) 호실배정은 각 호에 의하여 행정실에서 정한다. 배정된 방은 관생들간의 동의 등에 의하여 임의로 변동할 수 없다. <개정 2011.10.25.>

① 지체부자유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호실 배정 <신설 2011.10.25.>

② 관생의 희망에 따라 호실배정 <신설 2011.10.25.>

③ 고학년과 신입생 함께 기숙할 수 있도록 호실 배정 <신설 2011.10.25.>

④ 각 층에 학생 층장 선정 후 호실 배정 <신설 2011.10.25.>

⑤ 각 방에 고학년을 방 대표로 선정 <신설 2011.10.25.>

제5조(퇴사) ① 관생이 다음 각 호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관장은 그 관생을 퇴사시킬 수 있다.

1. 휴학·자퇴·제적된 자

2. 전염성 질환 환자 또는 보균자로 보건소장이 단체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<개정 2011.10.25.>

3. 관생수칙을 위반하여 11점 이상의 별점을 받은 자 <개정 2011.10.25.>

4. 학교 등록금 미납자 <개정 2011.10.25.>

5.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당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자

6. 건강검진진단서 미제출자 <신설 2011.10.25.>

② 학기의 종료와 함께 모든 학생은 절차에 의하여 퇴사과정을 밟아야 한다.

③ 퇴사 결정을 받은 학생은 3일 이내에 퇴사를 해야 한다.

제3장 일과표

제6조(일과표) 관생은 다음 각 호의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출입문 개문 : 오전 5시
출입문 폐문 : 오후 11시
2. 식사시간 : 아침 07:30 ~ 08:30
점심 12:00 ~ 13:30
저녁 17:30 ~ 19:00
단,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3. 면회시간 : 09:00 ~ 23:00
면회장소 : 각동 현관 <개정 2011.10.25.>
4. 소등시간 : 01:00 ~ 04:00 <신설 2011.10.25.>
5. 인터넷 점검시간 : 01:00 ~ 04:00 <신설 2011.10.25.>

제4장 인원점검

제7조(인원점검) 인원점검의 목적은 생활관 내의 인원 현황을 파악하고 각 개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.

- ① 인원점검은 정기 인원점검과 특별 인원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정기 인원점검은 매일 23시에 지도교수 및 각 층장이 실시하고 특별 인원점검은 필요에 따라 관장 지도하에 실시한다.

제5장 생활관 출입통제

제8조(생활관 출입) ① 생활관 내외 출입시간은 매학기 초에 생활관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어 별도로 공고된다.

실험, 연구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이 시간 외에 출입이 필요할 때는 생활관 지도교수나 일반직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1.10.25.>

- ② 23:00 이후에 외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생활관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중간고사, 기말고사, 대동제, 생활관 축제기간 등 학교 공식행사기간의 경우 관장의 허가 후 한시적으로 출입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신설 2011.10.25.>

제6장 식사절차

제9조(식사절차) 관생은 다음 각 호의 식사절차를 지켜야 한다.

- ① 식사 시 관생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소는 식당 내로 한정하고 배식된 음식물의 외부 반출은 금지한다. <개정 2011.10.25.>
- ② 환자의 식사는 관장의 승인하에 호실로 운반할 수 있다.
- ③ 식당 출입 시는 예의바른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.
- ④ 각 호실에서의 개별 식사 및 취식을 금한다. <개정 2011.10.25.>

제7장 관생증

제10조(관생증) ① 관생은 관생증을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.

- ② 관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 받아야 하며 퇴사 시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
- ③ 관생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.
- ④ 관생증을 재발급 받을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(3,000원)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0.25.>

제8장 외박, 외부인 방문

제11조(외박) ① 외박을 원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외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

- ② 외박 신청서를 피치 못한 사정으로 제출하지 못했거나, 제출한 외출 신청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실에 연락하여 즉시 재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무단 외박은 외박 신청서 없이 외박을 하거나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해당한다. 이 경우에는 귀사 후 2일 내에 무단 외박 사유서를 작성하여 일반직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- ④ 삭제 <2011.10.25.>

제12조(외부인 방문) ① 방문객이 생활관 내에 들어올 경우에는 학생들의 재산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행정실 또는 관리실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.

- ② 관생은 관장의 허가없이 외부인을 방이나 식당 등 관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은 금한다.

제9장 광고 및 게시물

제13조(게시와 광고물) ① 게시물은 지정된 규격(A4)을 사용하고 반드시 행정실을 경유하여 게시 기간과 확인인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.

- ② 확인인이 없는 게시물이거나 지정장소에 게시하지 않은 게시물은 통보없이 철거될 수 있다.
- ③ 모든 광고 및 게시물은 게시 후 3일 경과 후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고, 미 숙독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관생 자

신이 책임진다.

제10장 시설의 안전·보안·유지

제14조(시설의 안전·보안·유지) ① 각 방의 기물 중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층장에게 알리거나 행정실에 비치된 수리요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퇴사시 각 방에 지급된 비품은 정상상태로 지정된 위치에 정돈하고 열쇠, 관생증은 관리실에 반품해야 한다.

〈개정 2011.10.25.〉

③ 각 층별로 층장이 화기 책임자로서 각종 화재예방업무를 담당한다.

④ 관생은 각자 호실 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.

⑤ 모든 공동 이용 시설은 개인이나 그룹의 독점을 금지한다.

제11장 행사 및 집회

제15조(행사 및 집회) 생활관 내의 행사 및 집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. 부득이한 경우에는 5일 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2장 금지행위 및 동물 사육금지

제16조(금지행위) 관생은 호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① 호실 내에서의 음주, 폭행, 도박행위 및 화투, 카드놀이

② 전열기, TV, 전축, 커피포트, 전기요, 인화물질, 버너 및 위험물의 반입 또는 사용

③ 외부인에 대한 숙식제공 행위

④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

⑤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

⑥ 기물의 손상 및 파괴행위

⑦ 낙서, 부착물의 첨부,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

⑧ 선정적인 것이나 심각한 폭력물 등 공동체에 유해성이 인정되는 녹화물이나 인쇄물의 사용

⑨ 그 밖의 관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
제17조(동물 사육금지) 생활관 내에서 애완용 등 동물의 사육을 금지한다.

제13장 생활관비

제18조(생활관비) 생활관생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0.25.>

제19조(입사비, 관리비, 식비, 열쇠보관비) ① 입사비, 관리비, 식비 및 열쇠보관비는 지정된 날짜까지 납부해야 한다.

1. 입사비, 관리비, 식비, 열쇠보관비는 학교에서 지정한 날짜에 납부해야 하며 지정한 일자에 납부하지 않으면 입사가 취소된다.
2. 식비, 관리비 계산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.

< 입사시의 납입액 >

입 사 일	공 제 일
월 1일 ~ 5일 사이 입사시	없 음
월 6일 ~ 10일 사이 입사시	5 일분
월 11일 ~ 15일 사이 입사시	10 일분
월 16일 ~ 20일 사이 입사시	15 일분
월 21일 ~ 25일 사이 입사시	20 일분
월 26일 ~ 30일 사이 입사시	25 일분
이후 5일 단위 균분 처리	

〈 퇴사시의 환불액 〉

퇴 사 시	공 제 일
1일 ~ 5일 사이 퇴사시	5 일분
6일 ~ 10일 사이 퇴사시	10 일분
11일 ~ 15일 사이 퇴사시	15 일분
16일 ~ 20일 사이 퇴사시	20 일분
21일 ~ 25일 사이 퇴사시	25 일분
26일 ~ 30일 사이 퇴사시	30 일분
이후 5일 단위 균분 처리	

단, 군 입대, 자퇴, 전염성 질환환자의 중도 퇴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. 〈개정 2011.10.25.〉

〈결식시의 식비 환불액〉 〈삭제 2011.10.25.〉

제20조(특별 생활관비) 아래 각 항의 생활관비는 별도로 생활관장이 정한다. 〈개정 2011.10.25.〉

1. 방학 기간 〈개정 2011.10.25.〉
2. 외부 특별 방문객 〈개정 2011.10.25.〉

제14장 통 신

제21조(통신) 생활관 내에서의 통신시설은 다음과 같이 이용한다.

1. 교외전화는 공중전화를 이용한다.
2. 우편물은 우편함에서 본인이 수취한다.
3. 특수우편물은 학생증과 인장을 지참하여 관리실에서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수령한다.

제15장 관 리 및 변 상

제22조(관리) ① 생활관 지도관리를 위해 생활관장, 지도교수, 직원 및 사전 관장허가를 득한 업무관계자는 사전 통고 없이 호실을 방문할 수 있다. 〈개정 2011.10.25.〉

② 생활관 내 관생상호간 상행위는 일체 금지한다. 〈개정 2011.10.25.〉

제23조(변상) 관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 또한 공동 시설물이 파손 시 공동 부담한다.

제16장 포 상 및 징 계

제24조(포상자격)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포상한다.

- ① 생활관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현저히 공헌한 자
- ② 현저한 대외활동과 학문연마로 생활관의 명예를 드높인 자
- ③ 기타 선행행위를 한 자

제25조(포상구분) 포상은 총장, 생활관장의 포상으로 구분한다.

제26조(선행점 부여)

다음 각 항에 따라 선행점을 부여한다.

-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선행점 5점을 부여한다.
 - 1. 위 제24조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자
 - 2. 생활관 내 행사시 “최고의 방”으로 선정된 자
 - 3. 국가고시 합격자
- ②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선행점 4점을 부여한다.
 - 1. 긴급환자 발생 시 솔선하여 응급조치한 자
 - 2. 화재 발생 등 위급사항에 솔선수범하여 신속 대처한 자
- ③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선행점 2점을 부여한다. <개정 2011.10.25.>
 - 1. 습득물을 행정실에 신고한 자 <개정 2011.10.25.>
 - 2. 호실정돈 및 청소상태가 양호한 자 <개정 2011.10.25.>
- ④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선행점 1점을 부여한다. <개정 2011.10.25.>
 - 1. 생활관 식당에서 2시간 봉사활동을 한 경우 선행점 1점을 부여한다.
단, 이 경우 선행점은 학기 누적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다. <개정 2011.10.25.>
- ⑤ 생활관 운영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는 생활관 포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각 항에 합당한 선행점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27조(징계) 생활관의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.<조문전부개정 2011.10.25.>

- ① 벌점 누계가 11점이 초과되면 퇴사조치하며, 다음 학기 입사를 일체 불허한다.
- ②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벌점 10점, 최대 퇴사를 부과한다.
 - 1. 남·여 호실 무단 출입 위반자
 - 2. 관생증 대여 및 타관생증 무단사용자
 - 3. 비관생 및 외부인을 숙식시킨 자
 - 4. 절도행위자
 - 5. 열쇠 무단복제 사용자 및 대여자
 - 6. 동일 내용으로 벌점을 3회 연속 받은 자
- ③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벌점 7점을 부과한다. <신설 2013.08.06.>
 - 1. 호실 내 취사 및 취사 기구를 소지 한 자
단, 취사기구는 사생회에서 압수하여 관리하며, 퇴사 시 돌려준다.

2. 인화물질 기타 위험물 반입자 및 사용자

3. 전열기 무단 소지자 및 사용자

④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벌점 5점을 부과한다. <항번호변경 2013.08.06.>

1. 사행행위자 및 장소 제공자

2. 학칙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

3. 주류 반입자, 음주장소 제공자 및 음주자

4. 관내 시설물 및 기물 고의 파손자 및 훼손자

5. 관생 상호간에 폭력행위를 한 자

6. 무단 불법 집회자 및 집회준비를 한 자

7. 호실 임의 변경 및 호실 구조변경 한 자

8. 삭제 <2013.08.06.>

9. 폐문 후 입관자 및 무단 외출자

10.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

⑤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벌점 4점을 부과한다.<항번호변경 2013.08.06.>

1. 삭제 <2013.08.06.>

2. 퇴사 시 퇴사절차에 의하지 않은 무단퇴사 자

3. 입사 시의 서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부정하는 자

4. 생활관, 식당의 집기 또는 비품을 타 장소로 무단으로 이동, 운반한 자

5.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

⑥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벌점 3점을 부과한다.<항번호변경 2013.08.06.>

1. 삭제 <2013.08.06.>

2. 관생수칙을 위반하거나 지도계통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자

⑦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벌점 2점을 부과한다.<항번호변경 2013.08.06.>

1. 악기 연주, 고성방가, 인원점검 후 집단행동 등의 소란행위를 한 자

⑧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벌점 1점을 부과한다.<항번호변경 2013.08.06.>

1. 내의, 잠옷, 실내화 차림으로 관외로 출입한 자

2. 관내의 시설물 및 집기를 불량하게 관리한 자 또는 호실 정돈 및 청소가 불량한 자

3. 인원점검에 불참자 및 무단 외박자

4.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

⑨ 공동책임이 따르는 사항은 해당 호실 관생 전원에게 위 각 항에 준하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.<항번호변경 2013.08.06.>

제28조(선행점, 벌점 부과) 선행점 및 벌점 부과는 생활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생활관 지도교수 및 일반직원이 행한다.

제29조(포상 및 징계위원회) 포상 및 징계위원회는 생활관장, 지도교수, 일반직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① 선행점 부여 및 별점 부과

② 포상자 및 징계자 심의

제30조(선행점, 별점 상쇄)

선행점과 별점은 상호 상쇄할 수 있으며 다음 학기 사생 선발 시 이를 고려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